

의안번호	제 1 5 9 호
의 결 연월일	2003년 11월 일 제 회 충청북도조례·규칙심의회

심
의
의
결
사
항

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 출 자	기획관리실장 한 범 덕
제출연월일	2003년 11월 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필

- 위원회의 업무협조 및 지원을 위한 도정책신발전추진단 운영, 추진상황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(제19조)
-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제20조)

☐ 조례안 : 따로 붙임

☐ 관계법령 발췌 : 따로 붙임

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분권·행정혁신·균형발전·신행정수도 건설추진 등 주요 국정과제의 추진과 연계하여 도정의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 등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원칙) 혁신발전협의회는 대표성을 고려하여 기관·단체의 장 등으로 구성하고 지역혁신협의회, 지방분권·행정혁신위원회 및 삶의 질향상위원회는 전문성을 고려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.

제2장 혁신발전협의회

제3조(설치)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지역현안 및 도정 주요 정책의 추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4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국정과제에 대한 전략적 대응과 지역적 창조에 관한 사항
2. 도정혁신의 기본방향 설정 및 주요정책과제 수립에 관한 사항
3. 지역현안과제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

제5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와 민간 대표 1인을 공동회장으로 하고 도내의 기관 및 단체의 장 등 3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②민간대표회장은 도정혁신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1. 도내 기관 및 단체의 장
2. 경제계·시민사회단체 및 언론계 대표
3. 도정현안사업유치위원장
4. 지역혁신협의회회장, 지방분권·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, 삶의질향상위원회위원장
5. 도정혁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
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.

제6조(회의) ①회의는 협의회장이 소집하고, 정례회의는 반기별로 개최하며, 수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, 간사는 기획관이 된다.

제3장 지역혁신협의회

제7조(설치)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,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·조정 등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

문에 용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8조(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
2. 지역특화산업 진흥 및 산업집적 활성화에 관한 사항
3. 지역대학과 연계한 산·학·연 협력체제 강화에 관한 사항
4. 지역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및 혁신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
5. 지역거점 도시의 전략적 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
6. 산업단지와 연계한 교통물류 등 SOC 구축에 관한 사항 등

제9조(구성 등) ①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한 6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당연직위원은 경제통상국장·농정국장·건설교통국장,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지역혁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③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산업분과협의회, 과학기술분과협의회, 지방대육성및인적자원개발분과협의회 및 SOC구축분과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분과협의회회의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분과협의회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④위원의 임기는 제5조제4항에 의한다.

제10조(회의) ①회의는 의장이 소집하고, 정례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하며, 수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개최한다.
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행정기관(중앙·도·시군)간 기능 재정립 및 권한이양에 관한 사항
2. 지방재정기반 확충과 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
3. 민주적 지방자치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
4.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행정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
5. 일하는 방식 개선 및 행정운영시스템의 쇄신에 관한 사항
6. 전자정부의 구현에 관한 사항 등

제13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당연직위원은 자치행정국장·기획관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지방분권 및 행정혁신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③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행정개혁분과위원회, 인사시스템개혁분과위원회, 지방분권분과위원회, 재정·세제개혁분과위원회 및 전자정부추진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,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4조(임기 및 회의)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는 제5조제4항 및 제10조에 의한다.

제5장 삶의 질 향상위원회

제15조(설치) 복지 향상, 환경보존, 문화·관광자원 개발, 여성의 복지 및 권익향상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삶의질향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16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도민복지 및 행복지수 향상에 관한 사항
2. 환경보전 및 지속 발전 가능한 개발에 관한 사항
3. 문화·관광자원의 개발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
4.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양성 평등에 관한 사항 등

제17조(구성 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②당연직위원은 복지환경국장·문화관광국장·여성정책관으로 하고, 위촉위원은 복지환경, 문화관광, 여성정책분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.

③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분과위원회, 환경분과위원회, 문화관광분과위원회 및 여성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,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중에서 호선하고,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18조(임기 및 회의) 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는 제5조제4항 및 제10조에 의한다.

제6장 추진단 운영 등

제19조(추진단 운영) ①도정혁신에 관한 과제의 발굴·추진, 추진상황의 관리, 협의회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지원을 위해 충청북도정 혁신발전추진단(이하 “추진단”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추진단장은 기획관리실장으로 하고, 추진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관 실·국에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추진단은 소관분야별 도정혁신 추진상황에 대하여 위원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20조(수당)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충청북도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·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

제21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 발췌

〈지방자치법시행령〉

제42조 (자문기관의 설치)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조언·권고·건의·심의 또는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상근위원이나 사무직원을 두는 경우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